



보호조치행동계획

Protective Action Plan

보호조치행동계획이란 한 가족과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DCYF,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 부서) 간에 아이(들)에게 현재 처해있는 위험들을 어떤 방법으로 즉각적이고 단기적 행동으로 통제하고 관리 하느냐를 인지하여 서면으로 합의 하는 것입니다.

사건 명	사건번호
사건담당자성명	사건 담당자전화번호(지역번호포함)

현재의 위험

현재의 위험에 관한 설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행동

가정 밖으로 보내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발적 거취 동의, 보호감호, 또는 법원의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 행동에 대한 설명	참가자와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시작일자 그리고 예상 종료일자
1.		
2.		
3.		
4.		

서명

이 합의서의 준수에 실패 할 경우 부양 청원서의 제출과 아이(들)이 가정 밖으로 보내 질 수 있다는 권고 조치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보호조치계획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보호조치행동계획의 이유를 이해하고, 이 계획을 이행 할 것을 그리고 이행을 실행 할 수 없을 경우 사건담당자에게 통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모/간병인의 서명	날짜	부모/ 간병인의 서명	날짜
안전계획참가자서명	날짜	사건담당자서명	날짜

보고 관련:위급상황 또는 즉각적인 안전의 위험을 느낄 경우, 911 로 전화하세요.

보호조치행동계획과 관련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이 계획 상단에 있는 사건담당자의 전화번호 또는 저녁이나 주말 그리고 휴일에는 **중앙 접수처 1-866-363-4276** 로 연락하십시오.